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인증대상 품목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 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 다)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 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
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